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11. 29.)

상정, 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2) ‘혁신교육’,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 ‘미래교육’,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3) 마포구-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4)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북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혁신교육’,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 ‘미래교육’,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마포구-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타당성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2023년7월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서울특

별시 마포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우리 구는 2023. 6. 9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부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교육청(지원청), 자치구, 관내 학교 등의 협력으로 마포특화미래교육 구축, 배움과 섬을 통한 학교와 지역 간 교육 연계 강화, 청소년 창의교육 자원화, 어린이·청소년 창의활동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의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인 창의적 사고역량 등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그 제안배경에 비추어 볼 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미래교육지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 2.미래교육지구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미래교육지구지정·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지구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지구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공존의 미래, 새롭게 발돋움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청소년 미래역량 함양**

중점 과제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학교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 체계화

지역자원연계
방과후돌봄활동
통합지원

- 지역연계 방과후활동 지원 및 자치공간 확대
- 지역연계 맞춤형 통합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확대

-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운영
- 지역 유관기관 협력으로 미래역량 함양 프로그램 발굴·지원

행정지원체계 구축

- 지역연계 교육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 소통중심 협의체 운영
- 서울미래교육지구 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지원

[서울미래교육지구 핵심가치]

협력

나, 너, 우리, 좋은 삶!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지역사회(자치구)가 함께 협력합니다.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여 좋은 삶(well-being)을 영위하도록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합니다.



소통

일상적 소통이 공감으로!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일상의 문제를 다양한 구성원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합니다.



다양성

다름을 가치있게!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가꾸는 교육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치구 중심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안)」]

3.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일정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시기(예정)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 계획 •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 알림 •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안내 • 서울미래교육지구 공동협약식 및 출범식 • 서울미래교육지구 지구별 실행계획서 제출 •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별 1:1 협약식 • 서울미래교육지구 조례 전부개정 	2022. 12월 2023. 2월 2023. 4월 17일 2023. 5월 11일 2023. 5월 31일 2023. 6월 ~ 8월 2023. 6월
↓		
운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미래교육지구 지구별 운영(자치구-지원청) • 서울미래교육지구 중앙운영위원회 운영(교육청) •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지원청 협의체 운영 • 서울미래교육지구 홍보(교육청) • 서울미래교육지구 정책포럼 운영(교육청) • 서울미래교육지구 주체별 협의체 운영(교육청) • 지구별 평가보고회 개최(자치구-지원청) • 지역연계 교육과정 우수 사례 발표회(교육청) 	2023. 4월 ~ 2023. 연 2회 수시 연중 2023. 연 2회 2023. 분기별 1회 2023. 12월 2023. 12월
↓		
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체평가 및 환류 • 2024 지구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2024. 1월 2024. 2월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안)」]

4.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구분	세부사업	사업대상	내용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드림미(dream, me) 제작소	초·중	지역 일터, 직업인, 기관 등 활용하여 맞춤형 진로박람회 개최
	마포 청소년 싸이언스 월드	초·중·고	환경과학관련 직업인 및 전문가, 전문기관 활용한 과학창의 체험의장 및 과학창의 멘토링
	청소년 레벨업 - 드림in스쿨	초·중·고	관내 자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 학교와 연계한 뉴스포츠 교육체험
	청소년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을 Do-dream'	초·중	관내 전문가 및 전문기관 활용하여 창업활동 체험 교육진행
지역자원 연계 방과후 통합지원	自自프로젝트	초·중·고	교육 취약청소년 대상 관내 지역 강사 활용하여 개인별·맞춤별 1:1 문화배움과 학습멘토링 지원
	청소년마을프로젝트 -히스토리in 마포	청소년	관내 문화역사 현장 탐방 교육 및 지역사회 문제 발굴·개선활동
자치구 특화사업 확대	마포문화예술교육 꿈타래연기	초·중·고	마포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창의예술콘텐츠를 학교별 맞춤형으로 공급
	마포구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열음]	청소년	청소년 요구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청소년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마포구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스스로 프로젝트'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여 청소년의 특기와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 문화 환경개선과 소통의 장 마련
	마포구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를 통해 청소년 창의역량 강화 도모
행정지원 체계 구축	마포미래교육지구 지원	-	안전보험가입, 마포미래교육지구 홍보활동 지원 등
	마포미래교육지구 교육공동체 운영	-	사업별추진단 및 실무추진단 운영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23-172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2조 제1호 조문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1호 중 “**마포구미래교육지구**”를 “**마포구 미래교육지구**”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포구미래교육지구”를 “마포구 미래교육지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학생</u>”이란 서울특 <u>별시 마포구(이하</u> <u>“마포구”라 한다)</u> <u>소재 초·중·고등</u> <u>학교에 재학 중인</u> <u>학생 및 해당 연령</u> <u>의 청소년을 말한</u> <u>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마포구미래교육</u> <u>지구</u>”(이하 “<u>미래교</u> <u>육지구</u>”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u>교육감</u>”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 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 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u>마포구 미래교육</u> <u>지구</u>”----- ----- ----- ----- ----- ----- -----.</p>